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51
----------	-------

발의연월일 : 2026. 2. 4.

발 의 자 : 김장겸 · 박충권 · 박덕흠
서천호 · 조정훈 · 엄태영
박정훈 · 추경호 · 김재섭
이인선 · 강명구 · 안철수
의원(12인)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인공지능 패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막대한 투자를 포함한 다각도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부상함.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필수 인프라 요소 중 하나로서, 각국 정부 뿐만 아니라, 전세계 빅테크 기업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절차적 효율성을 제고하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원활

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전력, 용수, 부지 등의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실태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전력 확보 지원, 데이터의 활용 지원, 해외사업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 안전설비 설치에 관한 지침,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화지역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입지, 특화지역 지정 및 특화지역에 대한 지원, 전력공급 특례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용수, 부지 등의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지원 및 규제에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효율적 구축과 진흥을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발전 목표 및 정책 방향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입지, 전력 수급, 네트워크 연계 방안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제도 개선 사항
5.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지역(이하 “비수도권”이라 한다)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 방안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데이터 수집·보관·활용 촉진 방안

7. 재원 조달 및 공공수요 발굴 등의 투자 활성화 방안

③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마련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현황, 장비 동향, 전력 사용량 및 안전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활성화

제9조(허가등의 일괄처리)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허가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관계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등을 위한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등을 위한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심사개시사실·심사기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방법·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력 확보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수집·보관·학습·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데이터의 적정한 수집·보관·학습·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의 연구개발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해외 사업자 유치·제휴 지원) 정부는 국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기술 기업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및 국내 사업자와의 기술 제휴·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해외 진출 지원) 정부는 국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설비 설치 등에 관한 지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 등 안전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공

지능 데이터센터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준 또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주변 지역 주민에게 의견수렴 구역, 주체,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16조(규제개선 신청 등)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개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화지역 지정 및 지원

제17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입지)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전력, 용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입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공고할 수 있다.

제18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화지역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집적화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 것
2. 전력·용수 및 통신 인프라가 지역 내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순환 체계의 실효성이 마련된 지역일 것
3.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등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주민 수용성 및 환경적 안정성 확보 계획이 마련된 지역일 것

③ 시·도지사는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
3. 특화지역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와 적용범위
4. 그 밖에 특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는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

정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도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특화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지역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력공급시설(송전선로, 변전소, 변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 용수공급시설(용수관로, 가압장, 정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4. 주요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 등 교통시설
5.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및 관련 설비
6. 그 밖에 특화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건축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
3.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 등 인공지능 컴퓨팅인프라 확보를 위한 비용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 10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과 연계하여 특화지역 내의 다양한 분산에너지 활용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에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에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특화지역 입주기업체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해당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전력거래의 특례) ① 비수도권에 지정된 특화지역 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은 발전사업자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거래의 구체적인 절차, 공급 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